



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제출 의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자세히 알아보기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정책·정보 > 부패방지 정책 >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acrc.go.kr/menu.es?mid=a10101110000)



국민권익위원회